

A Study on the Object of the Fraud by Use of Computer

Jong-hee Lim *

Abstract

The Criminal Law of South Korea has needed to cope with new kinds of crimes such as the fraud by use of computer efficiently in a legislative way because the society has witnessed the rapid progress of the industrialization and informatization after established in 1953.

As a result, the Criminal Law revised on December 29, 1995, created the regulations of the crimes related to fraud by use of computer, work disturbance, and secret piracy by using information processing units.

The regulation stipulated in Clause 347, Article 2 of Criminal Law is the most typical one against the new crimes.

However, the new regulation of fraud by use of computer, established and revised to supplement the lacking parts of the current rules of the punishment of fraud, limits its object to "any benefits to property." not to "property" itself, and so cannot achieve the purpose of the revision of the law.

This paper aims to suggest a new legislative measure about the object of the regulation of fraud by use of computer to solve this kind of problem efficiently.

▶ Keyword : Fraud by Use of Computer(computer fraud), Larceny, Object, Personal property, Benefits to property, Cash dispenser, Cashback, Credit transfer

I . Introduction

우리 형법이 1953년 제정된 이후 우리 사회의 산업화와 정보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컴퓨터범죄 등 신종범죄에 입법적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게 되었다.[1]

그 결과 1995년 12월 29일 개정 형법에서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사기, 업무방해, 비밀침해 등 컴퓨터관련 범죄를 신설하였다. 이중 가장 대표적인 신설범죄가 형법 제 347조의2에 규정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이다.

이 죄는 컴퓨터에 직접 데이터를 입력하는 등 컴퓨터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로써 기존의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재산 범죄를 규제하기 위하여 규정된 사기죄에 관한 규정으로는 처벌할 수 없는 한계가 발생

하였다. 이러한 신종 범죄를 규제하기 위하여 신설한 것이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이다.[2]

즉, 이 죄는 컴퓨터의 보급이 확대되고 그 기능이 금융업무 등을 비롯한 재산관련 문제를 처리하는 기능까지 확대 되면서, 컴퓨터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등 컴퓨터를 이용한 범죄가 증가하였다. 즉 다른 사람의 통제를 받지 않거나 그를 기망하지도 않고 현금을 취득하지도 않은 채 예금구좌의 이동이나 대체송금을 통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사기죄의 구성요건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신설한 규정으로 소위 컴퓨터 범죄의 대표적인 유형을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3]

개정 형법에서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

• First Author: Jong-Hee Lim, Corresponding Author: Jong-Hee Lim

*Jong-Hee Lim (podori@dsu.ac.kr), Dept. of police administration, Dongshin University

• Received: 2015. 09. 02, Revised: 2015. 09. 04, Accepted: 2015. 09. 06.

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라고 규정하여 행위객체를 “재산상의 이익”만으로 한정하여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 죄를 입법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만으로 제한하고, ‘권한 없이 데이터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권한 없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데이터를 사용하는 행위’는 구성요건에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이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사람 몰래 사용한 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 한계점을 노출하였다.[4]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당연한 논리로, 이 규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법적으로 해결할 필요성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점 때문에 입법적으로 해결하고자 2001년 12월 29일 개정 형법을 통해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는 행위를 구성요건에 추가한 것이다.[5]

그러나 이 개정 형법 역시 그 행위객체에 “재물”을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우리 형법은 재산범죄의 객체에 관하여 재물을 객체로 하는 재물죄와 재산상의 이익을 객체로 하는 이득죄로 명시하여 규정하고 구분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03.5.13. 선고 2003도1178 판결 ; 대법원 2006.3.24. 선고 2005도3516 판결 등),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명확하게 구분되어 해석되어야 한다.

형법 제347조의 일반 사기죄는 그 객체를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기죄 처벌의 결함을 보충(또는 보완)[6]하기 위해 신설·개정된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의 행위객체에는 “재산상의 이익”만을 한정하여 규정하였을 뿐이고 “재물”을 제외함으로써 개정목적에 제대로 달성하기 어렵게 되었다.[7] 즉,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의 객체에 “재물”이 추가되지 못하였다는 점은 입법상 과오로서 입법론적으로 크게 비판받고 있다.[8]

두 번이나 신설·개정하면서 까지 행위객체에 재물을 배제한 것이 계속하여 논란의 대상이 될 것이며, 개정대상에 “재물”을 포함시켰더라면 보다 완벽한 입법이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아쉬움이 너무 크다.[9]

판례 또한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의 행위객체를 “재산상의 이익”만으로 보기 때문에 유사한 사례를 가지고 행위유형에 따라 절도죄와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를 구별하고 있다.

즉, 타인의 신용카드를 불법취득하여 사용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현금 인출이나? 계좌이체이나에 따라 적용법조가 다르고 형벌상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등 모순이 있다.

또한 동일한 컴퓨터의 부정사용이 취득한 재산의 형태에 따라 적용법조를 달리 한다는 것도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10]

따라서 불법취득한 타인명의의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를 이용한 현금인출행위 내지 계좌이체행위에 대하여 통일적으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문제가 제기된다.[11]

한편 대법원은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인출한 현금에 대하여

중전에는 주로 재물로 보았다가 최근에는 차액상당액을 재산상의 이익으로 보았다.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는 논리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해석 또한 타당한지 의문이 생긴다.[12]

확실 또한 이 죄의 객체인 재산상의 이익에 재물도 포함시켜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대답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관하여 아직까지 입법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학설과 판례의 해석에 일임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이해를 돕기 위하여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일반적으로 고찰하여 보고,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객체에 재물도 포함된다고 해석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학설을 검토해 보고, 수사기관과 하급법원에서 해석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대법원의 판례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의 구성요건 중 장애점이 되고 있는 행위객체의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Theoretical Background

1. The Overview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형법 제347조의2). 즉, 본죄는 컴퓨터를 이용한 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컴퓨터에 의한 정보처리를 마치 사람이 스스로 의사결정하여 거래를 하는 형태와 같은 것으로 취급하는 구상에서 비롯된 범죄유형이다.[13]

대법원도 이 죄는 재산변동에 관한 사무가 사람의 개입 없이 컴퓨터 등에 의하여 기계적·자동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악용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취하는 행위도 증가하였으나 이들 새로운 유형의 행위는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나 상대방의 처분행위 등을 수반하지 않아 기존 사기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설한 규정이라고 하였다(대법원 2014.3.13. 선고 2013도16099 판결).

오늘날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의 발달에 따라서 은행업무를 비롯한 여러 거래분야에서 자금의 관리, 결제, 이동 등은 사람의 개입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의해 기계적, 자동적으로 처리되는 상황이 증가하고, 이를 악용하여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행위는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나 재물의 점유이전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종래의 사기죄나 절도죄에 의해서는 대응할 수가 없었다.[14]

그래서 형법은 자동화된 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거래행태를 악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피하는 행위를 규율하기 위해 본죄를 신설한 것이고,[15] 이러한 부정행위를 사기죄의 한 유형으로 파악하여 처벌하고자 한 것이다.[16]

2. A comparative approach on the foreign cases

독일형법 제263조a(컴퓨터사기) 제1항에도 우리 형법의 본죄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17] 그 조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Wer in der Absicht, sich oder einem Dritten einen rechtswidrigen Vermögensvorteil zu verschaffen, das Vermögen eines anderen dadurch beschädigt, daß er das Ergebnis eines Datenverarbeitungsvorgangs durch unrichtige Gestaltung des Programms, durch Verwendung unrichtiger oder unvollständiger Daten, durch unbefugte Verwendung von Daten oder sonst durch unbefugte Einwirkung auf den Ablauf beeinfluß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fünf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위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프로그램의 조작이나, 허위 혹은 부실한 정보의 사용, 권한 없는 정보의 사용, 기타 정보처리과정에서 권한 없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정보처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일본형법 제246조의2(전자계산기사용사기죄)에도 우리 형법의 본죄와 유사한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前条に規定するもののほか、人の事務処理に使用する電子計算機に虚偽の情報若しくは不正な指令を与えて財産権の得喪若しくは変更に係る不実の電磁的記録を作り、又は財産権の得喪若しくは変更に係る虚偽の電磁的記録を人の事務処理の用に供して、財産上不法の利益を得、又は他人にこれを得させた者は、十年以下の懲役に処する』(전조 이외에 사람의 사무처리에 사용되는 전자계산기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재산권의 득실, 변경에 관한 부실한 전자적 기록을 작성하거나 또는 재산권의 득실, 변경에 관한 허위의 전자적 기록을 사람의 사무처리의 사용하여 재산상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취득케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Recent trend of The Fraud by use of computer

3.1 Population Change Trend by Year [18]

2000년부터 2013년까지의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저지른 사람이 계속 증가하였다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감소한다. 그러나 2009년부터 다시 증가하면서 2012년부터는 폭발적으로 증가 추세를 알 수 있다.

2000년부터 2013년까지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접수된 사건은 다음과 같다. 2000년에 267건, 2001년에 402건, 2002년에 801건, 2003년에 1,413건, 2004년에 1,344건, 2005년에 1,021건, 2006년에 914건, 2007년에 1,273건, 2008년에 1,138건, 2009년에 1,699건, 2010년에 1,508건, 2011년에 1,995건, 2012년에 3,375건, 2013년에 16,731건 이었다.

또한 기소율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는 30~50%이었으나, 2011년에 20%대로 감소하였다가 2012년에는 10%대로 더 감소

하였다. 특히 2013년에는 한 자리 숫자인 약 4%정도만 기소하고, 90% 정도는 불기소처분, 나머지 6%정도는 타관송치하였다.

2000년부터 2013년까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실제 기소된 사건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2000년에 267건 가운데 86건인 약 32%, 2001년에 402건 가운데 144건인 약 36%, 2002년에 801건 약 58%, 2003년에 1,413건 가운데 619건인 약 44%, 2004년에 1,344건 가운데 438건인 약 33%, 2005년에 1,021건 가운데 약 34%, 2006년에 914건 가운데 337건인 약 37%, 2007년에 1,273건 가운데 576건인 약 45%, 2008년에 1,138건 가운데 399건인 약 35%, 2009년에 1,699건 가운데 633건인 약 37%, 2010년에 1,508건 가운데 458건인 약 30%, 2011년에 1,995건 가운데 473건인 약 24%, 2012년에 3,375건 가운데 549건인 약 16%, 2013년에 16,731건 가운데 722건인 약 4%였다.

3.2 Population Change Trend by Year [19]

2013년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2013년도 컴퓨터 등 사용자 기죄의 발생 및 검거상황은 다음과 같다.

발생건수는 24,242건, 검거건수는 3,366건으로 발생건수 대비 검거건수에 대한 검거율 약 13.9%이고, 검거인원은 총 17,389명으로 남자 3,776명이고 여자는 1,021명 불상은 12,592명이라고 발표하였다.

4. The objective elements of the fraud by use of computer

4.1 The Object of Crime

행위객체는 재산상의 이익이다. 본죄에 재물도 포함할 것인가에 대하여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나, 판례는 부정설을 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III에서 후술한다.

4.2 The Behavior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것이다.

4.2.1 Information Processing Unit Such As Computers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란 자동적으로 재산이나 데이터의 처리를 할 수 있는 전자장치로서, 사무처리에 사용하는 정보처리 장치를 말한다.[20] 여기에는 범용컴퓨터를 비롯 이른바 오피스컴퓨터, 퍼스널컴퓨터, 제어용컴퓨터 등이 있으며, 네트워크 시스템의 단말기도 다른 기기에 편입되어 자동적으로 정보처리를 행하는 전자장치이므로 이에 포함된다.[21]

또한 여기의 정보처리장치는 사기죄의 본질에 비추어 사무처리에 사용되는 정보처리장치, 즉 재산권의 득실이나 변경에 관한 전자기록을 사용하는 정보처리장치에 한정된다.[22] 따라

서 은행의 온라인시스템과 연결된 컴퓨터, 현금카드에 의해 용역을 제공하는 현금자동인출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23]

4.2.2 False Information or Entry of Illegal Command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것은 예컨대 허위의 입금데이터를 입력하여 예금원장파일의 잔고를 증액시킨 경우와 같이 사실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자료를 입력하는 경우와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경우를 말하며 진실한 자료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도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경우에 해당한다.[24]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다는 것은 사실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자료를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25] 즉,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3.1.10. 선고 2002도2363 판결). 예컨대 허위의 입금데이터를 입력하여 예금원장파일의 잔고를 증액시킨 경우, 예금인출이 있었음에도 그 데이터를 일부러 입력하지 않은 경우, 은행의 온라인시스템 밖에서 만든 허위기록파일을 은행의 정기예금원장파일에 바꾸어 끼우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26] 이외에도 은행의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특정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계좌로 입금되도록 한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9.14. 선고 2006도4127 판결).

‘부정한 명령을 입력’한다는 것은 당해 사무처리시스템에 예정되어 있는 사무처리의 목적에 비추어 지시해서는 안 될 명령을 입력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3.11.14. 선고 2011도4440 판결). 즉, 부정한 명령을 입력한다는 것은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개개의 명령을 부정하게 변경, 삭제, 추가하는 행위를 각 의미한다(대법원 2003.1.10. 선고 2002도2363 판결).

따라서 설령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무처리시스템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개개의 명령을 부정하게 변경·삭제하는 행위는 물론 프로그램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그 사무처리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아니한 사무처리를 하게 하는 행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11.14. 선고 2011도4440 판결).

또한 프로그래머가 자신의 예금잔고를 부정하게 증액시키는 처리를 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입력시키는 것과 같은 프로그램조작도 여기에 해당한다.[27]

4.2.3 Entry and Change of Information Without Authority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한다는 것은 타인의 정보를 사용할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진실한 정보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또는 타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그 권한을 남용하여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계좌이체를 한 경우(대법원 2008.6.12. 선고 2008도2440 판결),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일정액의 현금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그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한 현금을 인출한 경우(대법원 2006.3.24. 선고 2005도3516 판결),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

용카드의 번호와 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ARS 전화서비스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대법원 2006.7.27. 선고 2006도3126 판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권한 없이 정보를 변경한다는 것은 입력된 정보가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과정에 권한 없이 간섭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28] 권한 없는 정보의 변경에 대한 예로는 타인의 의하여 입력된 정보가 처리·전송되는 과정에서 해킹을 통해 변경하거나 또는 콘솔이나 하드웨어 조작 등의 방법으로 정보처리과정에 영향을 미쳐 정보변경을 가져오는 것을 들고 있다.

4.2.4 Inducing Data Processing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것”은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의 입력 또는 권한 없는 정보를 입력·변경이 정보처리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29]

여기서 ‘정보처리’는 사기죄에서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상응하므로 입력된 허위의 정보 등에 의하여 계산이나 데이터의 처리가 이루어짐으로써 직접적으로 재산처분의 결과를 초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3.13. 선고 2013도16099 판결).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것은 사기죄에서 피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하는 것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정보처리가 행위자 또는 제3자의 재산상 이익취득의 수단으로 작용하여야 한다.[30]

4.2.5 Acquisition of the Benefits of Property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다는 것”은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을 불법한 방법으로 얻은 것을 말한다.[31] 그것에는 적극적 이익은 물론 소극적 이익도 포함된다.[32]

다만 행위자나 제3자의 ‘재산상 이익 취득’은 사람의 처분행위가 개재됨이 없이 컴퓨터 등에 의한 정보처리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4.3.13. 선고 2013도16099 판결).

4.3 Success or Failure of Initial Intention

(Establishment and Attempt)

본죄는 일련의 연속된 행위에 의해 결과발생에까지 이른다. 즉 ① 허위정보나 부정명령의 입력 또는 권한 없이 정보의 입력·변경 → ② 정보처리를 하게 함 → ③ 재산상의 손해발생 → ④ 행위자 또는 제3자의 재산적 이익취득 등이 그것이다.[33]

본죄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명령을 입력·변경할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기수가 된다.[34]

그러나 기수시키는 피해자의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때이지만, 그 원수시키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35]

대법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계좌로 입금되도록 한 경우, 이러한 입금

절차를 완료함으로써 장차 그 계좌에서 이를 인출하여 갈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형법 제347조의2에서 정하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는 기수에 이르렀고, 그 후 그러한 입금이 취소되어 현실적으로 인출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어떤 영향도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2006.9.14. 선고 2006도4127 판결).

5. The Actus reus subjective element

5.1 Intention

본죄는 고의범이므로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한다. 즉,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는 사실 및 이를 통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한다는 점, 그리고 이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야기한다는 점과 각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의사(인용)이다.[36]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37]

5.2 Intention of Illegal Acquirement Larceny (Intention of Illegitimate Gains)

본 죄는 불법이득의사가 있어야 한다.[38] 여기에서 불법이득의사란 자기 또는 제3자에게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해 주는 의사를 말한다.

그러나 재산상의 이익을 현실적으로 취득하였을 필요는 없다. [39]

III. Theory of the Object of Main Crime and the Review of Precedents

1. General Statement

기존의 사기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비교해 보면 전자는 사람에게 의하여, 후자는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재산의 변동이 생긴다는 점을 제외하면 구조가 다른 점이 없으므로, 기존의 사기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객체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40]

그런데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에서는 명문으로 “재산상의 이익” 만을 규정하고 있다.

학설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재산상의 이익” 에 “재물” 도 포함할 것인지에 대하여 적극설과 소극설의 대립이 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소극설의 입장이나,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인출한 현금을 재산상의 이익에 포함시킴으로써 논란이 되고 있다.

이하에서 본죄의 객체인 “재산상의 이익” 에 “재물” 을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하여 대립하는 학설의 그 논거와 판례의 견해를 검토하고자 한다.

2. Attitude of Theories

2.1 Positive Theory(Affirmative Theory)

본죄의 재산상의 이익에는 재물도 포함된다고 보는 견해[41]로서, 그 주요한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기죄가 재산상의 이익 외에 타인의 재물을 행위객체로 한 것과 비교해 볼 때, 행위객체로서 유독 재물을 제외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42] 따라서 본죄를 순수한 이득죄로 바라보고, 권한 없는 정보의 입력을 통해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재물의 취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극설의 입장은 너무나 문언의 형식적인 의미에 얽매인 것으로 옳다고 할 수 없다.[43]

둘째, 컴퓨터를 부정조작한 재산침해의 대상에 구태여 재물을 제외할 이유가 없으며, 해석론상으로 “재산상의 이익” 개념을 “재물” 을 포함하는 상위개념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컴퓨터를 사용한 “재물” 취득의 경우에도 본죄의 성립을 논리필연적으로 긍정하게 된다.[44]

셋째, 개정형법의 입법취지 및 컴퓨터를 조작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법정형 10년 이하의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하는데 반하여 현금과 같은 재물을 인출해 가면 7년 이하의 절도죄로 처벌된다는 것은 모순이므로 개정형법의 규정형식과 관계없이 “재물” 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본죄를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45]

2.2 Passive Theory(Negative Theory)

재산상의 이익에 재물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로서[46] 그 주요한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객체는 개정법 하에서도 오직 재산상의 이익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므로 현금이라는 재물을 인출하는 것을 재산상의 이익에 포섭시키기에는 유추해석금지라는 장애 사유가 발생하고, 본죄의 법정형은 절도죄의 그것보다도 높으므로 가능한 유추해석금지의 문제를 회피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형법을 해석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취지에 적응하여 현행법하에서도 판례와 같이 절도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사기죄(제347조)에서와 달리 컴퓨터등사용사기죄(제347조의2)가 “재물의 교부를 받는” 것을 제외하고 “재산상의 이익” 만을 규정한 것은 현금자동지급기가 입력한 정보에 따라 현금을 지급한 것을 사람이 기망당하여 재물을 처분한 경우와 같이 재물의 교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특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행위특성을 간과한 채 해석에 의해 재산상의 이익에 재물을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47]

셋째, 우리 형법은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을 준별하고 있으며, 이 구별은 재산범죄 전체를 관통하는 기본원칙이기 때문에 “재물” 과 “재산상의 이익” 을 넘나드는 해석은 극히 경계하지 않으면 안되고, 만일 이를 소홀히 하면 횡령과 배임의 구별이나 절도와 사기의 구별이 대단히 곤란하게 되므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객체에 “재물” 을 추가하여 기존의 사기죄와 보조를 맞추도록 하는 형법 개정의 방법 이외에는 없다고 생각한다.[48]

2.3 My Opinion

앞에서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의 재산상의 이익에 재물도 포함할 것인지에 대하여 적극설과 소극설의 논거를 살펴보았지만 주관에 따라 각기 타당성이 있다고 하겠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소극설이 적극설보다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우리 형법은 재산범죄의 경우에 행위객체를 “재물” 과 “재산상의 이익” 으로 명확하게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본죄는 “재산상의 이익” 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죄형법정주의의 과생원칙인 명확성의 원칙과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을 부정하면서까지 “재물” 을 포함시켜 해석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둘째, 부정취득한 신용(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를 본죄로 처벌하려면 본 죄의 구성요건에 “재물” 을 포함하는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형법 제347조의2에는 “재산상의 이익” 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인권보장을 위해서 불리한 유추해석은 금지되므로 본죄의 성립은 부정되어야 한다.

셋째, 실무에서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법의 해석은 엄격하고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하므로, 본죄의 “재산상의 이익” 에 “재물” 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넷째, 이러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형법개정을 통하여 본죄의 객체에 “재물” 을 추가하는 입법적 해결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무리하게 해석하여 형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를 포기하는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다.

3. Attitudes of Precedents

대법원은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객체는 재산상의 이익이지 재물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02.7.12. 선고 2002도2134 판결; 대법원 2003.5.13. 선고 2003도1178 판결). 그러나 현금자동지급기를 부정사용하여 현금인출한 경우를 재물로 보아 절도죄에 해당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 오다가 최근에 재산상의 이익으로 보아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된다는 모순되고 논리일관성이 없는 판결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한 판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3.1 Precedents Viewing Property(as a Theft)

3.1.1 The Supreme Court 28 July 1995.

Pronouncement 1995Do997 Judgment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그 현금을 취득까지 한 행위는 그 현금을 취득함으로써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하고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것이므로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한다.

3.1.2 The Supreme Court, 12 July 2002.

Pronouncement 2002Do2134 Judgment

형법 제347조의2에서 규정하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객체는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를 이 범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는 행위는 현금자동지급기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한 채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행위로서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1.3 The Supreme Court, 12 July 2002.

Pronouncement 2003Do1178 Judgment

우리 형법은 재산범죄의 객체가 재물인지 재산상의 이익인지에 따라 이를 재물죄와 이득죄로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형법 제347조가 일반 사기죄를 재물죄 겸 이득죄로 규정한 것과 달리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객체를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으로만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가 재물에 관한 범죄임이 분명한 이상 이를 위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입법자의 의도가 이와 달리 이를 위 죄로 처벌하고자 하는 데 있었다거나 유사한 사례와 비교하여 처벌상의 불균형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와 달리 볼 수는 없다.

3.1.4 The Supreme Court, 12 July 2002.

Pronouncement 2006Do3126 Judgment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현금서비스)을 받는 행위는 카드회사에 의하여 미리 포괄적으로 허용된 행위가 아니라, 현금자동지급기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한 채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행위로서 절도죄에 해당한다.

3.1.5 The Supreme Court, 12 July 2002.

Pronouncement 2008Do2440 Judgment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하고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것이 되어 절도죄를 구성하나, 피고인이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계좌이체를 한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있어서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관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한 행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절취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한편 피고인이 위 계좌이체 후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자신의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를 이용한 것이어서 이러한 현금인출이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또한 절취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결국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3.2 Precedents Viewing the Benefits of Property(The Case of Withdrawal Exceeding Entrusted Sum of Money)

대법원은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현금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카드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한 뒤 그 초과된 금액의 현금을 영득한 사례에서, 행위자는 그 인출한 현금 총액 중 인출을 위임받은 금액을 넘는 부분의 비율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그 차액 상당액에 관하여 형법 제347조의2에 규정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하는 행위로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된다고 판결(대법원 2006.3.24. 선고 2005도3516 판결)함으로써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인출된 현금을 재산상의 이익에 포함된다고 하였다.

3.2.1 Contents of Verdict of the First Instance Court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현금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그 위임받은 금액(20,000원)을 초과한 현금(30,000원)을 인출한 사안에서, 검사는 이 사건에 관하여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로 기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1심법원은 현금을 인출행위는 재산상의 이익이 아니므로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4.9.21. 선고 2004고단 664, 2004고단685(병합) 판결).

3.2.2 Contents of Verdict of Appeals Trial

검사는 항소심에서 절도죄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원심은 이를 허가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이 그 현금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일단 부여받은 이상(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현금인출부탁을 받은 이상)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을 절취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역시 무죄를 선고하였다(청주지방법원 2005.5.18. 선고 2004노1160 판결).

3.2.3 Contents of Verdict of Supreme Court

대법원은 이 사건 피고인이 공소외인으로부터 그 소유의 농협현금카드로 20,000원을 인출하여 오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받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 충주농업협동조합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현금카드를 넣고 인출금액을 50,000원으로 입력하여 이를 인출한 것도 그 차액 상당에 관하여 우선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즉, 20,000원을 인출하여 오라는 부탁을 받고 범인이 5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에게 20,000원을 건네주고 30,000원을 범인이 영득한 경우, 그 초과된 금액의 현금(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3.3 Reviews of Precedents

대법원 판례의 주류는 형법 제347조의2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객체를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으로만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가 재물에 관한 범죄임이 분명한 이상 이를 위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고, 현금자동지급기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한 채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행위로서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은 죄형법정주의의 과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을 관철하는 판례로서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인출된 현금을 재산상의 이익에 포함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인정하고 있는 대법원 2006.3.24. 선고 2005도3516 판결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객체에 재물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점에서 입법론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는 대법원이 실무의 운영상 문제해결을 위해서 인출된 현금은 재물이거나, 이를 경제적 가치로 추상화하여 행위자가 그 인출한 현금 총액 중 인출을 위임받은 금액을 넘는 부분의 비율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 판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비판이 제기된다.

첫째, 대법원이 제시하는 기준의 타당성을 논증하는 근거가 부족함을 알 수 있는데, 그 침묵의 이유는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준별하는 상황에서 재물이 재산상 이익으로 추상화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본 판례는 입법의 미비를 최종심인 대법원의 권위를 통하여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는 사법부에 의한 입법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49]

둘째, 본 판례의 경우에 제1심법원과 항소심법원이 “재물”과 “재산상 이익”의 준별이라는 대원칙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결론을 도출하였다면, 대법원은 실무에서 반발하는 범죄현상을 도의시킬 수 없다는 현실론에 입각하여 일단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본 판례는 대법원이 제시한 결론에 납득가능한 설명을 붙이는 일은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한다.[50]

셋째, 대법원은 위 현금인출행위가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가 점유하고 있는 현금을 절취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정면으로 부정하였는데, 원심법원의 판단에 대한 대법원의 분명한 입장의 실시가 없는 것은 의문이다.[51]

IV. Closing (Legalization Plan)

이상에서 이 죄와 관련된 여러 가지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먼저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가 입법화 된 이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어떻게 적용하여 왔는지를 이론적 측면과 실무적 측면에서 검토하여 보았다. 이하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의 구성요건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와 그에 대한 대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먼저, 이 죄의 행위객체에는 “재산상의 이익” 만을 규정하고 있는데도, 실무상 가장 많이 발생하는 컴퓨터에 부정한 명령이나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물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된 “재물” 을 “재산상의 이익” 에 포섭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결과, 형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포섭할 수 없다고 보는 소극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둘째, 대법원은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카드사용의 권한자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이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된 금액은 현금이지만 “재물” 로 보지 않고 “재산상의 이익” 으로 포섭시킨 해석은 이에 기속당하는 수사기관이나 하급법원의 해석지침에 혼란만 초래할 뿐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한다는 문제를 낳고 있다.

끝으로 이처럼 대법원까지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객체를 “재산상의 이익” 만 제한하고 있는 규정에 “재물” 을 포섭할 수 있는지의 문제로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기죄, 강도죄 등의 재산죄에서와 같이 “재물” 을 객체에 추가하는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현행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에서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 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 라고 규정하고 있다.

입법자는 빠른 시일 내에 위 형법 제347조의2의 행위객체에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 을 모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REFERENCES

- [1]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Examination Report of Proposed Amendment of Criminal Law,” p.2 Dec. 1995.
- [2] Ministry of Justice, “Explanatory Statement of Proposed Amendment of Criminal Law,” Material of Amendment of Criminal Law (XIV), p.180, Oct. 1992.
- [3] Ibid, p.182.
- [4] Lee, Jeong-Hoon, “Fraud by Use of Computer(Theory and Application),” Korea Studies Information, pp.261~262, 2006.; Lee, Jung-Hun, “Interpretation and Problems of Recent Proposed Amendment of Criminal Law (Fraud by Use of Computer),” Korea Criminal Law Association, No. 17, p.132, Jun. 2002.
- [5] Jeong, Ung-Seok, “Criminal Law Lecture,” Dae Myong, p.948, 2003.; Jin, Gye-Ho, “Particular Criminal Law(5),” Daewang, p.371, 2003.; Lee, Jeong-Hoon, Ibid., p.262 ; Lee, Jeong-Hoon, Ibid, p.132.
- [6] Kim, il-Su · Soe, Bo-Hak, “Newly Written Particular Criminal Law,” Pakyoungsa, p.359, 2015.; Son, Dong-Kwon, “Particular Criminal Law,” Yulgokbooks, p.329, 2004.; Shin, Ho-Jin, “Criminal Law Primer,” Munhyeong, p.849, 2014. ; Lee, Jae-Sang, “Particular Criminal Law(9),” Pakyoungsa, p.356, 2013.; Lim, Ung, “Particular Criminal Law(5),” Bobmunsa, p.404, 2013.; Jeong, Sung-Geun and Park, Gwang-Min, “Particular Criminal Law,” Samjiwon, p.354, 2002.; Jeong, Ung-Seok, “Criminal Law Lecture,” Dae Myong, p.948, 2003.; Lee, Jung-Hun, Op. Cit., p.182.
- [7] Jo, Jun-Hyun, “Particular Criminal Law,” Bubwonsa, p.295, 2002.
- [8] Shin, Dong-Un, “Analysis of Precedents of Particular Criminal Law(Revised),” Bobmunsa, p.504, 2014.; Lim, Ung, Op. Cit., p.404.
- [9] Bae, Jong-dae, “Particular Criminal Law(5),” Hongmunsa, p.461, 2003.
- [10] Park, Sang-ki, “Particular Criminal Law(8),” Pakyoungsa, p.329, 2011.
- [11] Kim, Jae-Yoon, “Analysis of Precedents Related to Fraud by Use of Computer - Mainly on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f Cash Withdrawal by Using Credit(Cash) Card Acquired Illegally under Disguised Ownership,” The justice, No. 107, Korean Legal Center, p.251, Oct. 2012.
- [12] As to the particular research of the above precedent, Cho, Hyun-Wook, “Cash Withdrawal Exceeding Entrusted Sum of Money and Fraud by Use of Computer,” Comparative criminal law research, Vol. 8, No. 1, Korean association of comparative criminal law, pp.407~426, 2006.; Ahn, Seong-Jo and Seo, Sang-Moon, “Criminal Responsibility of Cash Withdrawal Exceeding Entrusted Sum of Money-Whether Fraud by Use of Computer is Established or Not -,” Police law research, Vol. 7, No. 1, Korean police law association, pp.158~176, 2009.
- [13] Shin, Op. Cit., p.504.
- [14] Kim and Seoh, Op. Cit., p.358~359. ; Lee J. S, Op. Cit., p.356. ; Lee, Op. Cit., p.43.
- [15] Kim and Seoh, Ibid., p.359.
- [16] Lee, Op. Cit., p.43.
- [17] As to the detailed contents of the Computer Fraud

- of German Criminal Law, Kim, Jae-Yoon, "The Observation of No Authority of Computer Fraud in German Criminal Law," Comparative criminal law research, Vol. 10, No. 2, Korean association of comparative criminal law, pp.235~256, 2008.
- [18] Prosecution Yearbook, Supreme Prosecutors' Office, pp.690~695, 2014.
- [19] Police Statistics Annual Report, Korean police law association, p.117, 2013.
- [20] Lee, Op. Cit., p.145.
- [21] Kim and Seoh, Op. Cit., p.360.
- [22] Lee, Op. Cit., p.145.
- [23] Kim and Seoh, Op. Cit., p.360.
- [24] Ministry of Justice, Op. Cit., p.182.
- [25] Lee, Op. Cit., p.146.
- [26] Kim and Seoh, Op. Cit., p.360. ; Lee, Op. Cit., p.146.
- [27] Kim and Seoh, Ibid., p.361.
- [28] Kim and Seoh, Ibid., p.361.
- [29] Lee J. S, Op. Cit., p.358.
- [30] Bae, Jong-dae, Op. Cit., p.460.
- [31] Lee J. S, Op. Cit., p.359.
- [32] Lee, Op. Cit., p.151.
- [33] Kim and Seoh, Op. Cit., pp.362~363.
- [34] Lee J. S, Op. Cit., p.359.
- [35] Kim and Seoh, Op. Cit., p.363.
- [36] Kim and Seoh, Op. Cit., p.363. ; Park, Sang-ki, Op. Cit., p.331. ; Lim, Ung, Op. Cit., p.407. ; Jeong, Sung-Geun and Park, Gwang-Min, Op. Cit., p.357.
- [37] Kim and Seoh, Ibid., p.363. ; Lim, Ung, Ibid., p.407. ; Jeong, Sung-Geun and Park, Gwang-Min, Ibid., p.357. ; Jin, Gye-Ho, Op. Cit., p.373.
- [38] Kim and Seoh, Ibid., p.363. ; Park, Sang-ki, Op. Cit., p.331. ; Lim, Ung, Ibid., p.407. ; Jeong, Sung-Geun and Park, Gwang-Min, Ibid., p.357. ; Jin, Gye-Ho, Ibid., p.373. ; Lee, Op. Cit., p.153.
- [39] Park, Sang-ki, Op. Cit., p.331. ; Bae, Jong-dae, Op. Cit., p.461.
- [40] Shin, Op. Cit., p.504.
- [41] Kim and Seoh, Op. Cit., p.359. ; Oh, Young-Geun, Op. Cit., p.327. ; Lee J. S, Op. Cit., p.358. ; Lim, Ung, Op. Cit., p.404. ; Jeong, Ung-Seok, Op. Cit., p.951. ; Kwon, Oh-Geol, "The Requirement of Stolen Goods and Its Scope- Mainly on Fraud by Use of Computer and Breach of Trust -," Comparative criminal law research, Vol. 8, No. 2, Korean association of comparative criminal law, p.424, 2006.
- [42] Kim and Seoh, Ibid., p.359.
- [43] Kim and Seoh, Op. Cit., p.359. ; Lee J. S, Op. Cit., p.358.
- [44] Lim, Ung, Op. Cit., p.404.
- [45] Jeong, Ung-Seok, Op. Cit., p.951.
- [46] Park, Sang-ki, Op. Cit., p.329. ; Baek, Hyoung-Ku, "Particular Criminal Law," Cheongrim, 2002, p.187. ; Son, Dong-Kwon, Op. Cit., p.332. ; Shin, Ho-Jin, Op. Cit., p.850 ; Jo, Joon-Hyun, Op. Cit., p.295. ; Kim, Jae-Yoon, Ibid. p.260.
- [47] Kim, Jae-Yun, Op. Cit., p.258.
- [48] Shin, Op. Cit., pp.504~505.
- [49] Shin, Ibid., pp.504~505.
- [50] Shin, Ibid., p.505.
- [51] Cho, Hyun-Uk, Op. Cit., p.421.

Authors



Jong-hee Lim received the Ph.D. degrees in Criminal Law from Chosun University, Korea, in 2014. Dr. Lim joined the faculty of the Department of Police Science at Dongshin University, Naju, Korea, in 2014.

He is currently a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Police Science at Dongshin University. He is interested in complicity with any other person in crime, crimes against property, and pretrial motions.